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 27개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어, 판매소 확대로 스티커 구입이 쉽고 편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

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이 토요일 및 휴일에 배출되나 관공서의 토요일휴무제 등의 시행으로 휴무일 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하여 토요일휴무제 확대 등에 따른 개선이 절실함.

- 10ℓ, 20ℓ 용량의 규격봉투에 대하여 옅은 녹색을 넣어 시민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스티커 판매소 확대 : 27개 읍·면·동 ⇒ 840개 봉투판매소
- 스티커 판매에 따른 판매가의 10%이내의 이윤부여
- 쓰레기봉투(10ℓ, 20ℓ)에 옅은 녹색 투입
-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세분화

4. 참고사항

- 관리지침 :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(2003. 7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현행 읍·면·동사무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기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확대운영 함으로써, 관공서의 토요일휴무제 등 휴무일 시민들의 스티커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생활 침해 문제점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스티커 판매소 확대 : 27개 읍·면·동 $\Rightarrow$ 840개 봉투판매소
 - 스티커 판매에 따른 판매가의 10%이내의 이윤을 판매소에 부여
 - 쓰레기봉투(10ℓ, 20ℓ)에 얇은 녹색 투입으로 시민 사생활 침해 방지
 -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스티커 구입에 따른 구입자와 판매자간의 논쟁을 사전 차단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,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,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